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019-89호  
2019년5월13일(월)

여수시보

시정지표

- 1. 시민공감감동시정
- 1. 균형있는상생경제
- 1. 사람중심나눔복지
- 1. 품격있는문화관광
- 1. 살기좋은정주환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9-126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3
- 여수시 고시 제2019-127호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폐지(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6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1227호 여수국가산업단지(중흥2지구) 조성사업 추가 보상계획 열람 공고 /18
- 여수시 공고 제2019-1247호 어업면허 처분 공고 /21
- 여수시 공고 제2019-1249호 도로지정 공고(소라면 관기리 1046번지) /22
- 여수시 공고 제2019-126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23
- 여수시 공고 제2019-1268호 2019년 임도 관리원 모집 공고 /111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2019-1402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113
- 여수시 조례 제2019-1403호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24
- 여수시 조례 제2019-1404호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 여수시 조례 제2019-1405호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40
- 여수시 조례 제2019-1406호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45

회 람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019. 5.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오천동 341-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여수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나. 명 칭: 모사금해수욕장 진입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변경): (당초) 5,005㎡ (변경) 6,997㎡
  - 나. 규 모(변경): (당초) 중로2-34(L=10m, B=15m), 소로1-10(L=155m, B=10m),  
 소로2-2(L=78m, B=8m), 소로2-60(L=9m, B=8m), 소로2-68(L=258m, B=8m)  
 (변경) 소로2-68(L=630m, B=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4. 3.13. ~ 202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77) 및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 조서(변경)

순번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230-2	전	650	192	여수오천산업단지 식품가공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77(만흥동)	신규
2	233-1	전	76	10	여수시		신규
3	337-1	전	209	60	이옥자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135-4 안동연립 -201	신규
4	338-1	답	1,701	582	이재환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373-1	신규
5	335-2	전	633	70	강영자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311	당초
	335-2	전	633	90	윤석준	경남 함안군 칠원읍 삼호길 181 113동102호(광려천메트로자이아파트)	변경
6	342-1	도	59	59	강영자	오천동 311	당초
	342-1	도	59	56	강영자	오천동 311	변경
7	344-5	도	10	6	정채준	여수시 오천동 369	당초
	344-5	도	10	10	여수시		변경
8	344-2	대	356	48	정철훈	여수시 문수동 84-11	당초
	344-11	대	83	83	여수시		변경
9	917	도	468	87	국토교통부		당초
	917	도	247	87	국토교통부		변경
10	335-3	도	7	7	권중렬	오천동 369	당초
	335-3	도	7	1	권중렬	오천동 369	변경
11	333-4	도	60	60	여수시		당초
	333-4	도	60	60	여수시		변경
12	333-2	답	1,081	39	권태홍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91, 201/128	당초
	333-12	답	44	44	여수시		변경
13	333-5	도	13	13	여수시		당초
	333-5	도	13	13	여수시		변경
14	913-19	구	918	59	해양경찰청		신규
15	356-2	도	23	13	권수경	오천동 369	당초
	356-2	도	23	23	권수경	오천동 369	변경
16	356-6	도	479	335	여수시		당초
	356-6	도	479	479	여수시		변경
17	356-8	대	81	79	여수시		신규
18	908-12	도	728	418	국토교통부		신규
19	360-4	도	36	36	여수시		당초
	360-4	도	36	36	여수시		변경
20	360-8	대	93	14	박정순	여수시 오천동 360-8	당초
	360-12	대	19	19	여수시		변경
21	360-2	전	3,022	427	장권수	여수시 오천동 360	당초
	360-16	전	602	602	여수시		변경

순번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22	232-5	전	840	18	라여권	오천동 249-2	신규
23	232-4	도	74	74	박조도	357-1	신규
24	232	전	840	59	라여권	오천동 249-2	신규
25	339	대	268	51	곽명선	오천동 715	신규
26	341-9	도	299	31	여수시		당초
	341-9	도	299	123	여수시		변경
27	341-10	답	119	77	조영태	순천시 조례동 1658 주공아파트 702-804	당초
	341-10	답	119	64	조영태	순천시 조례동 1658 주공아파트 702-804	변경
28	341-7	도	17	14	여수시		신규
29	341-4	도	30	10	조영태	순천시 조례동 1658 주공아파트 702-804	신규
30	341-3	도	20	5	조영태	순천시 조례동 1658 주공아파트 702-804	신규
31	341-1	대	205	6	조영태	순천시 조례동 1658 주공아파트 702-804	신규
32	344-8	대	192	6	정후식	여수시 오천동 344-8	당초
	344-12	대	88	88	여수시		변경
33	356-5	답	1,213	5	권수명	여수시 오천동 148-5	당초
	356-7	답	47	47	여수시		변경
34	361-6	답	985	53	김용철 외 2인	여수시 오천동 361-6	당초
	361-9	답	72	72	김용철 여수시	여수시 오천동 361-6	변경
35	361-3	도	83	23	서양기	여수시 오천동 351	당초
	361-3	도	83	83	여수시		변경
36	361-4	답	17	5	서양기	여수시 오천동 351	당초
	361-4	답	17	17	여수시		변경
37	360-3	도	13	13	여수시		신규
38	360-6	도	26	26	여수시		신규
39	361-2	도	53	53	여수시		신규
40	360-7	대	212	80	장공수	여수시 오천동 360-7	당초
	360-17	대	87	87	장태인	경기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로 270, 113동 903호(한강우성아파트)	변경
41	360-10	대	75	9	장창수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282-2	당초
	360-15	대	9	9	여수시		변경
42	360-14	대	1	1	여수시		신규
43	360-5	도	13	13	장권수	여수시 오천동 360	당초
	360-5	도	13	13	여수시		변경

순번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44	360-9	대	229	4	주광식	여수시 화치동 882	당초
	360-13	대	2	2	여수시		변경
45	360-1	대	437	17	장권수	여수시 오천동 360	당초
	360-11	대	55	55	여수시		변경
46	381-1	대	324	191	서양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22-2 열매마을10단지아파트 1003-202	당초
	381-4	대	198	198	여수시		변경
47	380-1	대	205	43	김정봉	오천동 380	당초
	380-3	대	43	43	여수시		변경
48	379-2	도	10	10	김해곤	오천동 379	당초
	379-2	도	10	10	여수시		변경
49	374-2	도	17	17	김종욱	오천동 382	당초
	374-2	도	17	17	김종욱	오천동 382	변경
50	374-1	대	413	24	김영곤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60 금호아파트 12-806	당초
	374-3	대	28	28	여수시		변경
51	373-3	도	3	3	이정용	오천동 144	당초
	373-3	도	3	3	이정용	오천동 144	변경
52	373-2	대	370	54	이정용	여수시 오천동 144	당초
	373-5	대	59	59	여수시		변경
53	373-1	대	112	46	이재환	여수시 오천동 373-1	당초
	373-4	대	49	49	이재환	여수시 오천동 373-1	변경
54	369	대	321	155	김대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46-18	당초
	369-1	대	154	154	여수시		변경
55	370-1	대	167	26	김영기	여수시 오천길 33-18	당초
	370-5	대	48	48	여수시		변경
56	400-2	도	7	3	권희삼	오천동 141-5	당초
	400-2	도	7	7	여수시		변경
57	400-1	대	208	105	남재근외 1인	오천동 400	당초
	400-3	대	108	108	여수시		변경
58	908	도	6,248	611	국	해양경찰청	당초
	908-15	도	6,071	193	기획재정부		변경
59	401-1	전	2,489	53	여수시 서순자	여수시 전라남도여수시오천4길27	당초
	401-7	전	40	40	여수시		변경

순번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60	401-5	도	7	7	장학수	여수시 오천동 253-3	당초
	401-5	도	7	7	여수시		변경
61	401-4	도	3	3	장학수	여수시 오천동 253-3	당초
	401-4	도	3	3	여수시		변경
62	147-4	대	208	146	김옥태	오천동 147-4	당초
	147-10	대	138	138	여수시		변경
63	147-2	대	268	130	평소병호	오천동 378	당초
	147-9	대	119	119	평소병호	오천동 378	변경
64	147-1	대	225	203	윤윤식	오천동 147-1	당초
	147-8	대	195	195	여수시		변경
65	147-7	대	377	214	평소병호 외 1인	오천동 378	당초
	147-11	대	217	217	평소병호 여수시	오천동 378	변경
66	102-4	대	830	6	김동빈 외 1인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4길 28-2 (오천동)	당초
	102-8	대	4	4	여수시 황금식	서울성북구상월곡동산1	변경
67	107	대	522	319	윤정선	신기동 138 대림사택 28-402	당초
	107-1	대	389	309	윤정선	신기동 138 대림사택 28-402	변경
68	361-5	도	23	1	여수시		신규
69	367-10	대	238	89	배경만	여수시 오천동 367	당초
	367-15	대	85	85	여수시		변경
70	367-6	도	50	36	최상연	오천동 367	당초
	367-6	도	50	50	최상연	오천동 367	변경
71	367-2	대	519	40	김연희 외1	여수시 중화동 1061-5	당초
	367-12	대	38	38	여수시		변경
72	381-3	도	7	7	윤서홍	오천동 311	당초
	381-3	도	7	7	윤서홍	오천동 311	변경
73	381-2	도	3	3	윤서홍	오천동 311	당초
	381-2	도	3	3	윤서홍	오천동 311	변경
74	380-2	도	26	26	김동호	오천동 380	당초
	380-2	도	26	26	김동호	오천동 380	변경
75	367-9	대	810	173	김계곤외2명	여수시 무선로 50 등	당초
	367-14	대	173	173	여수시		변경

순번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76	367-4	전	258	54	최지태	여수시 오천동 155-3	당초
	367-13	전	49	49	여수시		변경
77	367-5	도	7	7	배의만	오천동 368	당초
	367-5	도	7	7	배의만	오천동 368	변경
78	368-1	대	215	74	배태수	오천동 368-1	당초
	368-3	대	86	86	여수시		변경
79	149-4	대	436	48	윤영준	오천동 149-4	당초
	149-10	대	59	59	윤수경	전남 순천시 구암3길 22, 104동 401호	변경
80	149-7	도	23	23	윤영준	오천동 149-4	당초
	149-7	도	23	23	윤수경	전남 순천시 구암3길 22, 104동 401호	변경
81	149-6	도	30	30	김소치엽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4길 22(오천동)	당초
	149-6	도	30	30	여수시		변경
82	149-1	대	156	37	이정식	여수시 오천동 149-1	당초
	149-9	대	41	41	여수시		변경
83	149-8	대	218	136	김여두	여수시 만흥동 1049	당초
	149-11	대	155	155	여수시		변경
84	149-5	도	7	7	김소치엽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4길 22(오천동)	당초
	149-5	도	7	7	여수시		변경
85	148-2	대	374	90	김용현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801 현대아파트 204-1206	당초
	148-11	대	108	108	여수시		변경
86	148-7	대	288	34	이정훈	오천동 148-7	당초
	148-12	대	44	44	여수시		변경
87	148-8	도	3	3	여수시		신규
88	148-1	대	347	12	이영옥	여수시 둔덕동 648 한려주공아파트 111-1201	당초
	148-10	대	11	11	여수시		변경
89	146	대	598	8	강동길	오천동 146	당초
	146-1	대	6	6	여수시		변경
90	108	대	331	140	이형재	선원동 1235-6	당초
	108-1	대	170	43	박정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52, 102동 1101호(신기동,우림필유)	변경
	109-1	대	119	25	박정일	여수시 문수동 45-1	
	109-1	대	119		박정일	여수시 문수동 45-1	삭제
합계			28,608	5,005			당초
			19,186	6,997			변경

○ 지장물 조서(변경없음)

일련번호	지장물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	건물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내용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오천동	341-10	담장	벽돌	78	미등기		순천시조례동1658 주공아파트702-804	조영태	토지소유자
			야자수	3년생	1	여수시 오천동 341-1	강전태			
			철쭉나무	3년생	3					
			동백나무	5년생	5					
			후박나무	10년생	1					
			장미	3년생	2					
			감나무	3년생	1					
2	오천동	344-8	건물	벽돌합석	51	여수시 오천동 344-2	정후식			
			건물	벽돌슬래브	23					
			가추	스레이트	20					
			담장	벽돌	74					
			마당	콘크리트	45					
			대문	철재	1					
			물탱크	FRP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보일러	기름	1					
			후박나무	10년생	1					
3	오천동	356-1	건물	벽돌슬래브	77	여수시 오천동 356-1	권수남			
			건물	벽돌슬래브	19					
			건물	벽돌스레이트	9					
			대문	철재	2					
			담장	벽돌	88					
			정화조		1					
			수도미터기		1					
			물탱크	FRP	1					
			보일러	기름	1					
			감나무	15년생	5					
			동백나무	5년생	3					
4	오천동	361-6	건물	벽돌합석	89	여수시 오천동 361-6	배정오	여수시 오천동 359-1	조준희	가압류
			건물	벽돌스레이트	32					
			가추	합석	22					
			대문	철재	1					
			담장	벽돌	54					
			마당	콘크리트	53					
			정화조		1					
			수도미터기		1					
			물탱크	FRP	1					
			보일러	기름	1					
			감나무	20년생	2					
			동백나무	8년생	1					
5	오천동	360-8	건물	벽돌스레이트	32	여수시 오천동 360-8	박정순			
			건물	벽돌스레이트	12					
			가추	합석	6					
			담장	벽돌	15					
			마당	콘크리트	15					
			정화조		1					
			수도미터기		1					
물탱크	FRP	1								

			보일러	기름	1						
			대문	철재	1						
6	오천동	361-6	담장	벽돌	20	미등기		여수시 오천동 351-2	김복심 외2명	토지소유자	
			대문	슬래브	4			여수시 오천동 361-6	배정오	공유자(205/985)	
			대문	철재	1				여수시 오천동 361-6	김용철	공유자(267/985)
			수도미터기		1				여수시 오천동 359-1	조준희	배정오지분가압류
7	오천동	360-7	건물	벽돌스레트	50	미등기		여수시 오천동 360	장권수	토지소유자	
			건물	벽돌슬래브	25						
			건물	벽돌스레트	10						
			가추	스레트	10						
			담장	벽돌	45						
			마당	콘크리트	44						
			정화조		1						
			수도미터기		1						
			물탱크	FRP	1						
			보일러	기름	1						
			대문	철재	1						
			감나무	20년생	3						
			매화나무	8년생	2						
			유자나무	15년생	1						
동백나무	3년생	3									
배나무	7년생	2									
8	오천동	360-9	담장	벽돌	4	미등기		여천시 화치동 882	주광식	토지소유자	
			대문	철재	1						
			감나무	20년생	4						
9	오천동	367-10	건물	벽돌스레트	48	여수시 오천동 367	배경만				
			건물	벽돌슬래브	9						
			건물	벽돌슬래브	17						
			건물	벽돌스레트	2						
			가추	스레트	2						
			담장	벽돌	58						
			마당	콘크리트	118						
			정화조		1						
			수도미터기		1						
			물탱크	FRP	1						
			보일러	기름	1						
			대문	철재	1						
			감나무	15년생	3						
			포도나무	5년생	2						
유자나무	7년생	1									
동백나무	5년생	1									
단풍나무	5년생	1									
목련나무	10년생	1									
10	오천동	367-2	건물	벽돌스레트	65	여수시 오천동 367-2	최상연				
			가추	스레트	13						
			담장	벽돌	35						
			보일러	기름	1						
			물탱크	FRP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무궁화나무	8년생	3									
11	오천동	360-1	건물	벽돌슬래브	45	미등기		여수시 오천동 360	장권수	토지소유자	

			가추	스래트	8					
			담장	벽돌	24					
12	오천동	381-1	건물	벽돌합석	54	미등기		여수시 오천동 381	윤이레	토지소유자
			건물	벽돌스래트	1					
			가추	합석	12					
			담장	벽돌	20					
			마당	콘크리트	80					
			보일러	기름	1					
			물탱크	FRP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대문	철재	1					
			감나무	20년생	2					
			석류나무	20년생	2					
13	오천동	380-1	건물	벽돌슬래브	4	미등기		여수시 오천동 380	김정봉	토지소유자
			담장	벽돌	26					
			마당	콘크리트	30					
			물탱크	FRP	1					
			정화조		1					
			대문	철재	1					
			감나무	10년생	1					
			사철나무	5년생	1					
			장미	5년생	3					
14	오천동	367-9	담장	벽돌	20	여수시둔덕동657 한려주공(아)104- 1105호	차주정			
			매화나무	5년생	3					
			대문	슬래브	2					
15	오천동	367-9	건물	벽돌기와	54	미등기		여수시 오천동 367	김계곤 외2명	토지소유자
			담장	벽돌	54			여수시 오천동 367	권수연	공유자(19 8/810)
			보일러	기름	1			여수시둔덕동657한 려아파트104-1105	차주정	공유자(23 2/810)
			물탱크	FRP	1					
			정화조		1					
			무화과나무	15년생	2					
			앵두나무	5년생	1					
			동백나무	5년생	1					
			오가피나무	3년생	10					
16	오천동	367-9	건물	벽돌스래트	50	미등기		여수시 오천동 367	김계곤 외2명	토지소유자
			건물	벽돌슬래브	33			여수시 오천동 367	권수연	공유자(19 8/810)
			가추	슬래트	37			여수시둔덕동657한 려아파트104-1105	차주정	공유자(23 2/810)
			담장	벽돌	26					
			보일러	기름	1					
			물탱크	FRP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감나무	3년생	1					
			유자나무	5년생	2					
17	오천동	374-1	건물	벽돌스래트	40	미등기		여수시 오천동 113	김행곤	
			담장	벽돌	29					
			감나무	20년생	2					
			석류나무	20년생	2					
18	오천동	373-2	건물	벽돌슬래브	20	여수시 오천동 144	이정용			

			담장	벽돌	26							
			마당	콘크리트	39							
			대문	철재	1							
			정화조		1							
			수도미터기		1							
19	오천동	373-1	건물	벽돌슬래브	110	미등기	김선태	여수시 오천동 373-1	이태원	토지소유자		
			건물	벽돌슬래브	6							
			건물	벽돌슬래브	3							
			담장	벽돌	9							
			마당	콘크리트	25							
			대문	철재	2							
			보일러	기름	1							
			물탱크	FRP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20	오천동	369	건물	벽돌기와	84	여수시 오천동 369	박갑래					
			건물	벽돌기와	40							
			건물	벽돌슬래브	6							
			담장	벽돌	13							
			마당	콘크리트	42							
			물탱크	FRP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보일러	기름	1							
			감나무	15년생	4							
			대추나무	10년생	1							
			사철나무	5년생	1							
			동백나무	5년생	3							
유자나무	5년생	1										
			모과	5년생	1							
21	오천동	367-1	건물	벽돌합석	84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 1468	김용근					
			건물	벽돌슬래브	3							
			담장	벽돌	11							
			정화조		1							
			수도미터기		1							
			물탱크	FRP	1							
	보일러	기름	1									
22	오천동	368-1	건물	벽돌합석	66	여수시 오천동 368-1	배태수					
			대문	철재	1							
			담장	벽돌	12							
			정화조		1							
			수도미터기		1							
			물탱크	FRP	1							
	보일러	기름	1									
23	오천동	370-1	건물	벽돌슬래브	35	미등기	홍순덕	여수시 오천동 370-1	김의곤	토지소유자		
			가추	스래트	3							
			물탱크	FRP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치자나무	5년생	1							
			동백나무	5년생	3							
			목련나무	10년생	1							
	야자수	10년생	1									
24	오천동	149-4	건물	벽돌슬래브	110	여수시 오천동 149-4	평소인석					
			담장	벽돌	40							

			보일러	전기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감나무	25년생	4							
			물탱크	FRP	1							
25	오천동	400-1	건물	벽돌합석	84	미등기	남채근	여수시 오천동 371	남채근 외1명	토지소유자		
			건물	벽돌합석	8			여수시 오천동 371	최상대	공유자(58/208)		
			건물	벽돌합석	12							
			담장	벽돌	24							
			마당	콘크리트	15							
			보일러	기름	1							
			물탱크	FRP	1							
			대문	철재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대문	철재	1							
			감나무	20년생	3							
			매화나무	8년생	2							
			유자나무	15년생	1							
			동백나무	3년생	3							
			배나무	7년생	2							
26	오천동	149-1	건물	벽돌슬래브	98	여수시 학동 18-32	이순아					
			건물	벽돌합석	12							
			건물	벽돌슬래브	5							
			담장	벽돌	22							
			마당	콘크리트	32							
			보일러	기름	1							
			물탱크	FRP	1							
			대문	철재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감나무	20년생	1							
			동백나무	3년생	2							
			장미	3년생	1							
27	오천동	400-1	건물	벽돌합석	28	미등기	최상대	여수시 오천동 371	남채근 외1명	토지소유자		
			건물	벽돌합석	7			여수시 오천동 371	최상대	공유자(58/208)		
			마당	콘크리트	12							
			보일러	기름	1							
			물탱크	FRP	1							
			대문	철재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28	오천동	149-8	건물	벽돌슬래트	66	여수시 만흥동 1049	김여두					
			건물	벽돌슬래트	18							
			담장	벽돌	49							
			마당	콘크리트	50							
			보일러	기름	1							
			물탱크	FRP	1							
			대문	철재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감나무	20년생	1							
			장미	5년생	1							
29	오천동	147-4	건물	벽돌합석	50	미등기	김옥태	여수시 오천동 147-4	김옥태	토지소유자		

			건물	벽돌슬래브	14							
			담장	벽돌	26							
			마당	콘크리트	35							
			보일러	기름	1							
			물탱크	FRP	1							
			대문	철재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감나무	15년생	1							
			동백나무	5년생	2							
			유자나무	5년생	1							
			치자나무	5년생	2							
			철쭉나무	5년생	9							
			장미	5년생	1							
30	오천동	147-2	건물	벽돌슬레이트	50	미등기		여수시 오천동 378	평소병호	토지소유자		
			건물	벽돌슬레이트	28							
			담장	벽돌	36							
			마당	콘크리트	65							
			보일러	기름	1							
			물탱크	FRP	1							
			대문	철재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감나무	15년생	3							
동백나무	15년생	1										
목련나무	25년생	1										
31	오천동	148-7	건물	벽돌슬레이트	60	여수시 오천동 148-7	이정훈					
			건물	벽돌슬레이트	15							
			가추	스레이트	24							
			담장	벽돌	77							
			정화조		1							
			수도미터기		1							
			물탱크	FRP	1							
			보일러	기름	1							
32	오천동	147-1	건물	벽돌슬레이트	30	미등기		여수시 오천동 147-1	윤윤식	토지소유자		
			건물	벽돌슬레이트	40							
			건물	벽돌슬래브	35							
			가추	스레이트	12							
			마당	콘크리트	67							
			보일러	기름	1							
			물탱크	FRP	1							
			대문	철재	1							
			수도미터기		1							
			정화조		1							
			감나무	15년생	10							
			동백나무	5년생	3							
			매화나무	15년생	2							
			치자나무	2년생	2							
철쭉나무	5년생	9										
장미	15년생	1										
33	오천동	107	건물	벽돌슬래브	50	여수시신기동138 대림사택28동402호	윤정선					
				벽돌슬레이트	1							
				합석	12							
			담장	벽돌	20							
			계단	콘크리트	8							

			보일러	기름	1						
			물탱크	FRP	1						
			수도미터기		1						
			사철나무	20년생	1						
			동백나무	5년생	5						
			감나무	5년생	1						
			유자나무	15년생	5						
34	오천동	108	담장	벽돌	58	여수시 선원동 1235-6	이형재				
			계단	벽돌	9						
			물탱크	FRP	1						
			정화조		1						
			수도미터기		1						
			사철나무	5년생	1						
			장미	5년생	3						
35	오천동	148-1	담장	벽돌	30	여수시 선원동 222-6	문영노	여수시	세무과	압류	
			대문	철제	4			서울마포구공덕동25 4-5 중소기업은행영업본부	중소기업은행	가처분	
			정화조		1			여수시 문수동 42-4	여수농협협동조합	근저당권 설정	
			수도미터기		1						
			감나무	5년생	2						
			동백나무	5년생	3						
			야자수	15년생	1						

##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폐지(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관기공원 등 7개소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부칙 제7476호 제8조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폐지(실효) 되었음을 알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13.

### 여 수 시 장

#### 1. 실 효 일

- 관기공원 : 2019년 5월 4일
- 구름질공원 등 6개 공원 : 2019년 5월 13일

#### 2. 실효사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부칙 제7476호제8조

- 가. 시·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공원 중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 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1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
- 나. 법 시행 당시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 된 도시공원은 최초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

#### 3.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 4.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5.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 조서

## □ 공간시설

### ○ 공원

#### - 공원 폐지(실효)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444	관기	근린공원	관기리 587일원	66,280	감) 66,280	-	전라남도고시 제220호 (2009.5.4)
폐지	401	구름길	어린이공원	죽림리 129-11	1,500	감) 1,500	-	여수시고시 제67호 (2009.5.13)
폐지	423	오리박골	어린이공원	관기리 산19-4	1,560	감) 1,560	-	여수시고시 제67호 (2009.5.13)
폐지	423	사랑댕이	어린이공원	관기리 496-1	1,500	감) 1,500	-	여수시고시 제67호 (2009.5.13)
폐지	423	상관	어린이공원	관기리 262	1,520	감) 1,520	-	여수시고시 제67호 (2009.5.13)
폐지	443	성본	어린이공원	관기리 983-10	1,510	감) 1,510	-	여수시고시 제67호 (2009.5.13)
폐지	422	하관	소공원	관기리 산12-9	1,490	감) 1,490	-	여수시고시 제67호 (2009.5.13)

#### - 공원 폐지(실효)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실효일	변경사유
444	관기	■폐지 : 감) 66,280m <sup>2</sup>	2019. 5.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401	구름길	■폐지 : 감) 1,500m <sup>2</sup>	2019. 5.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423	오리박골	■폐지 : 감) 1,560m <sup>2</sup>	2019. 5.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423	사랑댕이	■폐지 : 감) 1,500m <sup>2</sup>	2019. 5.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423	상관	■폐지 : 감) 1,520m <sup>2</sup>	2019. 5.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443	성본	■폐지 : 감) 1,510m <sup>2</sup>	2019. 5.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422	하관	■폐지 : 감) 1,490m <sup>2</sup>	2019. 5.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 여수국가산업단지(중흥2지구) 조성사업 추가 보상계획 열람 공고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동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 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보상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삼동지구 조성사업	여수시장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일원

###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50-3, 50-11, 51-2, 51-10, 51-3, 51-11, 51-5, 51-12, 51-6, 51-7, 51-9, 51-13, 51-14, 51-15, 52-1, 52-8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보상 기준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5호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일(2015.10.6.)
- 나. 보상 대상 물건: 2015.10.6. 이전부터 현재까지 당해 구역에서 존재하는 토지, 지장물 등을 대상으로 결정된 물건 등(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열람 장소 비치)

### 4. 보상시기 : 2019년 5월 이후

###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손실보상액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산출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함
- 나.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개별통지

### 6.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9년 5월 13일 ~ 5월 27일(15일간)  
 ※ 열람 기간 중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나. 열람장소  
 - 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여수시 시청로 1, ☎ 061-659-4586)
-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여수시청 공영개발과에 이의신청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입증 서류와 함께 제출 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 7. 기 타

-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분할 측량,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 및 수량이 변경(편입 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나.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등 보상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겠으며,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 통보를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13.

여 수 시 장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2지구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여수시 중흥동	50-3	전	4	여수시 봉계동 11 대광오투 빌 110-902	서*기				
2	여수시 중흥동	50-11	전	318						
3	여수시 중흥동	51-2	도	26	여수시 삼일면리 중흥동 463	강*곤				
4	여수시 중흥동	51-10	도	176						
5	여수시 중흥동	51-3	전	4	여수시 무선로 50, 107동 901호, 학동아파 시밀리에아 파트	김*균 (김영김씨월 내중친회)				
6	여수시 중흥동	51-11	전	399						
7	여수시 중흥동	51-5	전	158						
8	여수시 중흥동	51-12	전	7						
9	여수시 중흥동	51-6	전	66						
10	여수시 중흥동	51-7	대	317						
11	여수시 중흥동	51-9	전	284						
12	여수시 중흥동	51-13	전	18						
13	여수시 중흥동	51-14	전	4						
14	여수시 중흥동	51-15	전	2						
15	여수시 중흥동	52-1	전	28						
16	여수시 중흥동	52-8	전	60						
	합 계			1,871						

##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 어업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1767	패류양식 어업	수하식	4	돌산 우두	2019.05.13. 2029.05.12.	400	여수시 응천7길 15	문순돌	11266 대체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19. 5. 13.

# 여 수 시 장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1046번지 이민석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63m	약10.6m	669㎡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소라면 관기리	1046	63m	약10.6m	669㎡	“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13.

# 여 수 시 장

##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여 수 시 장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가. 용역명 :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 나. 용역사업시행 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369외(돌산, 자산공원)
  -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라. 용역금액 : 금362,168천 원(부가세포함)
- 마. 입찰예정시기 : 2019년 6월중(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바. 입찰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 가.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 건설부문 : 조경, 토목구조, 도시계획, 토질·지질, 환경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또는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④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 이여야함.) 구성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업체로 구성하여야 하고,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⑤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공동 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⑥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2018. 11. 8.)」 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이 부여됩니다.

####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평가서 제출 장소 : 여수시 공원과

다.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19. 5. 28.(화)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당일에 한하며, 팩스, 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서 포함)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날인)]
- 3)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5부(1부 소속표기, 4부 소속 미표기), 제출서류(자기평가서 및 엑셀파일 포함)중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는 전산화 하여 USB 1개 제출
- 4) 관련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등) 1부
  -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 3. 입찰참가업체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 2019-365호)」에 의거 작성한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이상을 득점한 업체중 상위 10개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심사후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통보는 나라장터 입찰참가대상자 등록으로 같음하며,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공고문 및 평가서(평가기준 등)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시는 등기부등본상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 확인 또는 입증해야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이나 업체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이 공고문,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에 대한 해석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원과(☎061-659-4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 본 기준은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19-365호)관련 조경분야 설계용역의 작성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돌산,자산)공원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 I. 총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계		100		
가.참여기술인		50.0		
	사업책임기술인	15.0	절대평가	
	등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급에 따라 평가</li> <li>• 해당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수행 총경력</li> <li>• 최근10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li> </ul>
	경력	4.0		
	실적	8.0		
	분야별책임기술인	19.0	절대평가	
	등급	4.0		
	경력	7.0		
	실적	8.0		
	분야별참여기술인	14.0	절대평가	
	등급	4.0		
경력	5.0			
실적	5.0			
교육훈련,전차용역	2.0	절대평가		
교육훈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li> <li>• 전차용역 참여실적</li> </ul>	
전차용역	1.0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5.0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li> <li>- 건수 7.0점, 금액 7.0점</li> <li>• 전차용역 참여실적</li> </ul>
다.신용도		10.0	절대평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별점 등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용역업자, 참여기술인</li> <li>• 기간 : 최근 1년간</li> <li>•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li> </ul>
	재정상태 건설도	3.0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	절대평가	
	개발실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히, 실용신안</li> <li>•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li> <li>• 활용실적 : 준공된 실적</li> </ul>
	투자실적	10.0		
	활용실적	3.0		
마.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li> </ul>
	사업책임기술인	3.0		
	분야별책임기술인	4.0		
	분야별참여기술인	2.0		
	실무기술인	1.0		
바.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li> </ul>

## II.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15	. '건설기술자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3						
		구 분						
	점 수	3.0		2.4		1.8		
	경력	4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 근무경력기간으로 평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증명서 확인자료)					
			구 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실적	8	. 대상 :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용역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b>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b> ,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용역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 조경분야 용역 100% - 해당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3년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설계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하되,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되는 건수까지 인정함(* 입찰공고시 인정기준 제시) - 단,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외 유사분야의 실적에 대하여 80% 인정한다. * 유사분야 : 별표 1-8.산림분야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분야별 가중치 적용가능 - 공고시제시) -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 점수의 합 / 참여기술자의 수					
		4	. 자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 분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계	4.0		3.2		2.4		
	경력	7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계	7.0	6.3	5.6	4.9	4.2
	실적	8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계	8.0	7.2	6.4	5.6	4.8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14	. 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분야별 가중치 적용가능 - 공고시제시) -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 점수의 합 / 참여기술자의 수						
		4	. 자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 분	중급 이상			초급		
		계	4.0			3.2			
	경 력	5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계	5.0	4.5	4.0	3.5	3.0		
	실 적	5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 가중치 조정가능						
			구 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계	5.0	4.5	4.0	3.5	3.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1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 2주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 차 용 역 수 행 실 적	1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은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용역 책임기술인이 금차용역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이 금차용역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해당용역의 중요 1개분야로 제한하며 공고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분야, 특별한 경우 변경 가능)						
			구 분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10년 미만	
		책 임 기 술 인	0.5		0.4		0.3		
		분야별책임기술인	0.5		0.4		0.3		
		- 점수 = 배점 × (참여기간/과업기간) × 100 * 2개이상 용역을 통합한 경우 지분을 적용 평가 - 점수 x 용역비율(해당기술인 참여용역 비율/전체 용역)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용역업자	15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용역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b>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b> ,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 용역					
	실적	7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 조경분야 용역 100%					
			※ 발주청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금액	7	실 적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전차용역수행실적	1	.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 적 금 액			30억이상	30억미만 25억이상	25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 참여업체의 전차용역은 용역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10년 미만	용역완료후 10년 이상		
점 수	1.0	0.8	0.6	0				
- 점수 = 배점 × 전차용역참여지분율 × 당해용역참여지분율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2개이상 용역을 통합한 경우 지분율 적용 평가								
- 점수 x 용역비율(해당용역 비율/전체 용역)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별 점	10 7	.용역업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건설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 합산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누계평균 별 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 점	-0.2	-0.5	-1.0	-2.0	-3.0	-5.0
	재 정 상 태 건 실 도	3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 업 어 음	A3- 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 업 신 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 실적	15 2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 의한 토목, 조경직무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1건만 인정 - 2인 이상 공동으로 최초출원시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	배 점 (건당)	경 과 기 간 가 중 치				
					5년 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신 기 술	2.0	-	-	-		
			특 허	1.0	100%	80%	60%		
실 용 신 안	0.5	100%	8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투 자 실 적	10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 수	10	9	8	7	6
	활 용 실 적	3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만 인정) 제출					
			.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 의한 토목, 조경직무분야					
			.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 용 건 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 용 금 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 무 중 복 도           사 업 책 임 기 술 인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10	.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설계용역의 과업기간 합산 - 평가대상자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참여중인 모든 설계용역이 해당됨.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용역,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은 미합산한다. .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						
			구 분	①	②	③	④	⑤	
			I	200% 이하	200~250% 이하	250~300% 이하	300~350% 이하	350% 초과	
			. 평 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인, 분야별참여기술인 5인, 실무기술인(전원) . 방 법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 용역중복기간 산정은 당해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용역의 용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 당해용역 24개월, 수행중인용역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용역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3	. 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3.0	2.7	2.4	2.1	1.8	
			4	. 분야별 책임기술인(5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4.0	3.6	3.2	2.8	2.4	
			2	. 분야별 참여기술인(5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2.0	1.8	1.6	1.4	1.2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실 무 기 술 인	1	. 실무기술인(참여인원 전원) -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1.0	0.9	0.8	0.7	0.6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이상 : 0.1점</li> <li>· 2% 이상 : 0.2점</li> <li>· 3% 이상 : 0.3점</li> </ul> </li> <li>*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li> <li>*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li> <li>*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li> <li>-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li> <li>-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li> </ul>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Ⅲ.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2호 (2018. 12. 26)]에 의하여 우리 道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다만, 입찰공고일 직전 1개월 이내 준공용역은 발주청 경력확인증명서도 인정하며, 이 경우 2014. 5.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은 반드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용역 수행 중 등재한 경우만 인정),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전차용역 수행실적 등은 각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민간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용역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 평가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 분명한 부분, 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 나.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해 각각의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전체 백분율의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공동도급자는 기술인 1명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다.
- ※ 공동도급시 지역용역회사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용역회사 중에서 반드시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미참여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시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가 해당됨)
- (예시) 평가인원 11명, A사 70%, B사 30%

- A사(60%~80%) = 6.6명~8.8명 ≒ 7명~9명
- A사(20%~40%) = 2.2명~4.4명 ≒ 2명~4명

8.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나 설계보상대상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발주청의 확인 별도 첨부 - 미첨부시 인정 안 됨)
9. 공고일 기준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 제외).
  - 평가대상 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점수에 적용
  -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90일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90일이상 180일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180일 이상 : 1.0
10.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가능한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2.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평가항목에 한함)

#### IV.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단,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용역수행성과는 상대평가)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자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text{개월}/12\text{개월})\times 1\text{건}$ 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 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며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만 인정한다. 단 반드시 당해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

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 용역사업 중 최종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5.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건수 및 금액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해외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 -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참여기술인 실적, 업체 유사용역 실적평가지 '14.5.23. 이후 계약 용역 중 실제 준공이 되지 않은 용역을 준공된 것으로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평가항목(사업책임 15점, 분야별 책임 19점, 분야별 참여 14점, 용역업자 15점)을 "0점" 처리한다

6.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전차용역은 참여기술인 실적 및 회사 유사용역 실적 적용범위를 적용하지 않음 (○○분야 설계 실적평가지 2억원 이상만 인정하는 경우 전단계 용역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전차로 인정)

7.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1.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9.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신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40% 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다.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2.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3.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 가.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4.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종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5.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7.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8. 각 해당분야별 실무기술인은 5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낙찰업체의 경우 실제 착수계 제출시에도 동일한 인원으로만 구성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건설기술인의 범위 (제4조 관련)

####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지질 3) 항만 및 해안 5) 철도·삭도 7) 상하수도 9) 토목시공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 토목구조 4) 도로 및 공항 6) 수자원개발 8) 농어업토목 10) 토목품질관리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3) 건축시공 5) 건축품질관리	2) 건축기계설비 4) 실내건축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3) 가스	2) 소방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3) 소음진동 5) 자연환경 7) 해양	2) 수질관리 4) 폐기물처리 6) 토양환경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3) 건설마케팅	2) 건설기획 4) 건설정보처리

####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관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을 %)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약자	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III.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해외건설협회장(인)	
용역명			
발주처			

#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발주처					
공사명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9. 5.



여 수 시  
( 공 원 과 )

# 목 차

## 제 1 장 일반사항

1. 과 업 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용역감독 등
7. 계약상대자의 책임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9. 설계자문 및 심의(디자인 심의, 기술심의)
10.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1. 보안 및 비밀유지
12.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13. 하도급 사항
14. 설계변경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17. 용어의 해석
18. 설계 등 손해배상
19.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20.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21. 적용기준 및 시방서
22.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제 2 장 조사업무

1. 현지답사
2. 측 량
3. 지장물 조사
4. 지반조사
5. 하수도 현황조사

6. 수리, 수문조사
7. 용지조사
8.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9. 수전변전소 및 송배전 현황조사
10. 국내외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제 3 장 설계업무

1. 기본설계
2. 실시설계
3.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4. 공원조성계획(변경)수립

###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2. 작성
3. 납품
4. 예정공정표

# 제 1 장 일 반 사 항

## 1. 과 업 명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 2. 과업의 목적

도심 내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조성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함

## 3. 과업의 개요

### 가. 과업의 내용

1)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 위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396 외(돌산공원, 자산공원)

○ 면적 : 445,751㎡(돌산 212,700㎡, 자산 233,051㎡)

○ 내용 : 지형현황측량,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 나.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10개월로 한다

### 다. 과업기본방향

1) 기존 자원을 활용한 시설 도입과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자연친화적인 공원 조성

2) 지역 특색을 강조한 조성으로 차별화

3) 안전하고 내구적인 시설을 도입하여 유아,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교통약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검토

4) 지역주민의 원활한 접근과 편리한 사용(휴식)이 가능하도록 설계

5) 설계 시 위치선정 및 공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안)을 작성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

### 라. 과업의 내용

1) 조사 및 자료수집

가) 자료수집 : 부분 조성된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도면, 내역 등)

나) 현지조사 : 기존도면과 현장과의 상이(오시공, 파손 등)한 사항 조사

나) 측 량 : 현장에서 실측(측량) 실시

다) 지장물 조사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라) 지반조사

마) 하수도 현황조사 : 공원주변의 하수도 상황을 조사하여 원활한 배수 설계

바) 수리, 수문조사

사)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 2) 도시관리계획

- 가)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나)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계획 설명서
- 라)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 마) 관련부서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바) 농지·산지협의 등

## 3) 계획업무

- 가) 일반사항
- 나) 수리수문 분석검토
- 다) 위치선정 및 시설물 배치계획
- 라) 배수계획
- 마) 설계기준 설정
- 바) 시설 규모결정 및 시설계획
- 사) 유지관리 계획검토

## 4) 실시 설계

- 가) 기반시설 설계
  - 부지조성, 전기통신, 구조물,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부대공 등
- 나) 건축 설계 : 필요시 수행
  - 화장실, 샤워장, 관리사무실, 취사장 등
- 다) 조경 및 시설물 설계
  - 조합놀이대 등의 어린이놀이 시설, 산책로, 조경수 및 기타 편익시설과 부대시설 등
- 라) 전기설계 : 공원등, 가로등 등 전기시설

## 4) 공원조성계획 수립

## 5) 실시설계 인가

##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 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착수신고서

- 가)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 나) 예정공정표
- 다) 내역서

###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분야별 책임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 3) 보안각서

###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가) 과업의 개요

- ① 명 칭
- ② 목 적
- ③ 개 요

### 2) 과업의 내용

### 3) 과업수행 방법

- 가) 설계조건
- 나) 적용기준
- 다) 요청자료
- 라) 설계흐름도 (FLOW CHART)
- 마) 업무협의
- 바) 세부방안
- 사) 품질관리방안

- 4) 공정표
- 5) 과업수행 조직표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나)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 다)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 라) 성과품 작성시
- 마) 준공시
- 바) 공정보고시
- 사)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진도보고를 매월 2회 이상하며 보고시 아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나) 관련부서(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다)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 라)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마) 참여기술자 현황
- 바)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4) 작업일지 작성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7. 계약상대자의 책임

###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9. 설계자문

### 가. 자문시기

1)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면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가) 착수단계

나) 중간단계

다) 마무리단계

라)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자문결과 반영

1) 계약상대자는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10.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 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회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12.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해당없음)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 13. 하도급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2) 하도급 받은 용역 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라. 책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14. 설계변경

- 가.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다.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또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사업대가 산정시 근거가 된 공사비의 변경 등으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 5)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 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 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 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 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 1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 나.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 다.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 17. 용어의 해석

-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18.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9.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처는 제공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다.
- 나.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 후 반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자료 중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는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 처리하도록 한다.

## 21.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 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 1)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 2)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발행)
  - 지반조사 표준품셈
- 3) 하천설계기준 및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발행)
- 4)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발행)
- 5) 한국산업규격(KS)
- 6)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7)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대기환경 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9)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 10)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나. 건축법, 소방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관리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 22.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준수사항

-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4) 발주처 사정에 의한 변경사항(경관심의 등 각종 위원회 심의 추가, 조성공원의 조감도 작성 등)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처의 사정상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5)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 3) 건설폐자재등 활용방안 검토 제시
- 4) 우수지(저류지)구조물 시공시 양압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제시
- 5)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 6)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 7)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 1)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별 추진 공정이 30~70%일 때 발주자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 승인된 VE 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제 2 장 조사업무

본 과업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현지답사
- 측 량
- 지장물 조사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 지반조사
- 수리, 수문조사
- 용지조사
- 국내외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1. 현지답사

가.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다.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 2. 측 량

### 가. 일반사항

- 1)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과 공공측량 작업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4) 측량 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 5)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 6)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 나. 삼각 및 다각측량

- 1)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 2)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 뿐만 아니라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3) 사업예정지 인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는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 다. 수준측량

- 1)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으로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 3) 사업예정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라. 현황측량

- 1)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200으로 한다.
- 2)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 3) 현황측량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 4)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구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마. 횡단측량

- 1) 본 공사에 필요한 중·횡단측량은 2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 2)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중·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중 1:100, 횡 1:6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바. 표석매설

금회 측량성과를 사업시행시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준표석을 매설하되 별도 규격의 표석으로 견고히 매설하고,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 3. 지장물 조사

- 가. 계획 구역내 각종 지하매설 및 지장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나.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 (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 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 다. 지상시설물(건물 및 구축물) 보상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 라.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 마.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4. 지반조사

가. 일반사항

- 1)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지질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가) 조사범위, 조사위치도
  - 나) 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 다) 과업수행 세부계획
-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 4)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를 실비 정산한다.
-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 6)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현지답사를 통한 지형, 지표관찰과 기존의 지질도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의 다음과

같은 지반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 1) 기반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 2)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 3) 계획지역 주변 자연사면의 안정성
- 4)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의 분포, 두께, 및 특성
- 5)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징
- 6)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 7) 기타 본 과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상태

다. 시추조사

- 1)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2) 시추공수는 빗물펌프장 증설 설치조건 및 지반 개량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지점에 실시하도록 한다.
- 3)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 상에 표시한다.
- 4)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를 설치하되, 필요시에는 시추전 인력터파기(지하 1.5m 이상)를 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한다.
- 5)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토사구간의 조사에서 시추대신 시굴(Test Pit) 또는 오거보링 (Auger Boring)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7) 구조물의 시추심도는 최소한 지지층의 하부 심도하 2m, 터파기 심도하 2m까지 기반암이 확인 안된 경우는 일부 조사공에 대해 기반암 2m 확인
- 8) 암반층 시추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아베럴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하여야 한다.
- 9)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아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코아베럴이나 D-3 코아베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이 경우 코아 회수율이 최소한 60% 이상이어야 삼중 코아베럴에 의한 시추단가로 정산한다.
- 10)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를 산정한다.
- 11)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구역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 12) 도로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3) 시추를 완료 후 시추공은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 14) 시추 완료 후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 15) 연약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시료상자를 보관하여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16) 시추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한다.

17) 표준관입시험은 KS 규정에 의하고, 매 1.0m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시행한다.

라. 실내시험

1)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한다.

가) 함수비 시험 : KS F 2306

나) 체분석 시험 : KS F 2309

다) 액성한계시험 : KS F 2303

라) 소성한계시험 : KS F 2303

마) 비 중 시험 : KS F 2308

바) 입도분석시험 : KS F 2302

사) 암석시험 : 일축압축시험

아) 현장시험 : Pressuremeter test(모래질 흙, 풍화암)

2)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시험을 추가한다.(필요시)

가) 일축압축 강도시험 : KS F 2314

나) 삼축압축 강도시험 : KS F 2304

다) 압 밀 시험 : KS F 2308

마. 시료정리

1) 조사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2) 암석코어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암석코어가 아닌 스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바. 보고서

1)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에 수록한다.

2)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4)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시추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나) 암석명, 색상, 풍화도

다)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라)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 (RQD), 코어회수율(TCR)

- 마) 지하수위 관측치
- 바)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 사) 기타 참고사항

6)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7)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 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정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 5. 수리, 수문조사

- 가. 홍수, 강우에 의해 시간당 및 장시간 연속강우를 기준으로 몇 년 빈도에 해당되는 가를 조사 한다.
- 나. 홍수, 강우시 방류하천의 수위를 조사한다.
- 다. 계획시설설치로 인한 수리, 수문영향을 분석하여 수문 및 배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6. 용지조사

- 가.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한다.
- 나.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기재한다.
- 다. 보상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7.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방재시설과 관련된 인근의 상위계획을 조사한다.

- 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나. 하천정비계획
- 다. 주변 관거계획

## 8. 국내외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본 과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본 과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자료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는 국내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완벽한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적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 3 장 설계업무

## 1. 기본설계

### 가. 정의

- 1) "기본설계"라 함은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여건의 조사 분석

##### 1) 자연환경 조사

- 가) 지형, 지세, 지질, 지표, 분수지 등      나)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적설량 등
- 다) 토양, 식생, 희귀식물 분포 등      라) 야생동식물 조사

##### 마) 경관구성

##### 2) 인문사회·환경조사

- 가) 현존 토지의 이용 현황      나) 대상지 주변 현황 및 연관성
- 다) 교통과 도로      라) 수용능력(이용권, 이용자수 등)

##### 3) 법규검토

- 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환경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등 설계 용역과 관련된 모든 법규

#### 다. 기본구상

- 1) 계획의 목표체계 설정      2) 이용 프로그램 개발      3)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 구상

##### 4) 개발전략 구상

#### 라. 기본설계

##### 1) 기본설계의 범위

-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인·허가 기준 검토
- 나)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다) 사업시행 위치의 지리, 인문, 교통, 환경 타당성 검토
- 라) 상소체육공원(2단계) 조성 기본계획 방향 정립
- 마) 기본적인 단지 계획 작성 및 단지별 이용계획
- 바) 개략공사비 및 공기 산정
- 사) 토사 절·성토 및 토량 이동계획 검토
  - 아) 단지내 물의 이용 및 우수 배수, 우수처리 계획
  - 자) 이용자의 이동 동선 및 향후 부지확장성 검토
  - 차) 관리운영 및 연차별 시설 및 사업비 투자계획
  - 카) 단지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2) 기본설계의 작성

- 가) 토지이용 계획      나) 동선, 도로망 계획      다) 기반조성 계획
- 라) 경관구성 계획      마) 조경시설 계획      바) 환경보전 계획
- 사) 도입시설 계획      아) 수목확보 및 식재계획

## 2. 실시설계

### 가. 정의

- 1)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시설계서 작성

- 1) 실시설계서는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을 작성

## 다. 실시설계

- 1) 설계 개요 및 법령등 제기준 검토
- 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3)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 4)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5)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6)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7)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현지조사 및 토석정보시스템 등 이용) 샘플링, 품질시험 및 자재 공급계획
- 8) 측량·지반·지장물·수리·수문·지질·기상·기후·용지조사
- 9)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 10)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 11) 기타 필요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 라. 관급자재·물품의 종류

수급인은 실시설계시 발주기관과 협의된 관급자재·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한다.

## 마. 기술지침

### 1) 기본 개념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관리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환경에 조화되어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 2) 공간의 배치 및 크기

각종 시설물의 공간의 크기, 위치, 소요수량, 성능 등은 공간의 배치에 있어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기능을 최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수급인은 이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 3) 설계지침

#### 가)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 ①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등이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
- ② 건축물 등 시설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설이 되어야 한다.

#### 나)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 ①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다.

다)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 ① 주변환경에 적합하고 독창성 있는 미적 감각을 지닌 시설물로 설계한다.
- ② 기존부지의 수목, 주변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이행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③ 인체에 유해한 자재(석면 등)와 에너지 다소비형 자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자재를 사용한다.

라) 소음, 진동, 방진의 고려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제26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2조(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마) 단열, 보온, 결로에 대한 계획

건축물은 건축법 제59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 활용)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바) 채광, 조명, 환기계획

최대한의 자연채광과 적절한 조도, 환기로 이용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산림치유 효과가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사) 방재 및 보안계획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법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아) 쾌적성 및 편리성

냉·난방환기가 원활하여 이용관리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건강 치유증진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자)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와 제21조의 4(안전관리비)에 규정대로 작성 후 토목(조경), 건축, 전기, 통신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차) 설계도면 공통사항

① 설계도면 표지 내용

- ㉠ 공 사 명 : 000공사
- ㉡ 공 종 : 건축, 조경, 토목, 기계, 전기, 통신
- ㉢ 제 출 일 자 : 0000. 00. 00
- ㉣ 수 요 기관명 :
- ㉤ 설 계 사 무 소 명 :
- ㉥ 용 도 : (기본설계.실시설계)

② 도면 목록표

③ 건축 개요

- ㉠ 공 사 명 : 000공사
- ㉡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
- ㉢ 대 지 : 지역, 지구, 접근 도로 현황등
- ㉣ 건 물 : 공사종별(신.증축),용도, 구조, 층수, 최고높이, 연면적, 지상층면적, 건

측면적, 건폐율, 용적율

- ㉑ 주 차 대 수 : 법규정, 주차계획대수
- ㉒ 조 경 면 적 : 법규정, 계획면적
- ㉓ 설 비 사 항 : 저수조, 정화조 등
- ㉔ 기 타 : 층별 바닥 면적, 주용도 등

카) 기타

- ① 유지관리에서 점검방법이 용이해야한다.
- ② 정보화 등에 대비한 미래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 ③ 시설관리, 방충 등에 대한 고려를 한다.
- ④ 관계기술자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 바. 분야별 설계지침

### 1) 토목 분야

#### 가) 기본지침

- ①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예상 민원 및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② 부지내의 지하에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 ③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형식을 선정한다.
- ④ 공법의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경제성, 시공성, 굴착심도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한다.

#### 나) 기본설계 내용

기본설계서는 <제3장 설계업무 1.기본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 다) 실시설계 내용

##### ① 대지조성

- ㉑ 건축, 토목 및 기타 구조물 잔토를 대지 내에서 자체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여 건물 및 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 ㉒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며 토량 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 ㉓ 성토 비탈면 구배는 1 : 1.5 이상의 완만한 사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옹벽설치 등을 검토, 설계한다.
- ㉔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한다.
- ㉕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㉖ 부지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에 단면을 추가한다.
- ㉗ 토취장 선정시에는 토취장의 위치, 운반거리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정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각종 훼손에 따른 보수 및 정비비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를 고려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설계가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고, 설계도서에 위치와 거리, 이동 방향 등을 명시한다.
  - ㉡ 암 발파공법이 필요시에는 지형, 암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고 소음, 진동 및 비산 방지대책은 물론 인근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 ㉢ 원지반 또는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별도의 연약지반처리공법이 필요한 경우 공법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따라 현장조건에 적절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하되 공법의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비교 검토(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흠막이
- ㉠ 흠막이,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등은 경제적인 공법 및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한다.
  - ㉡ 지하 굴토 공사를 위한 흠막이 설계는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토질 및 기초분야 또는 토목구조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작성한다.
- ③ 지하 굴토 공사를 위한 흠막이 방법의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지반조사 보고서에 의한 시험결과와 지중 매설물, 장애물의 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민원 검토,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④ 구체공사의 시공에 영향을 주는 공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흠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또는 지반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적용근거를 첨부한다.
- ⑥ 굴토공사에 따른 주변 지반의 토사 이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균열, 함몰, 기타 위해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차수 및 주변 토사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⑦ 상수도
- ㉠ 수도법 및 관련 법규와 해당관청의 급수조례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 ㉡ 급수량은 1일1인당 시간 최대 급수량, 화재시는 계획1일 최대 급수량으로 산정한다.
  - ㉢ 급수관로의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저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 수압작용으로 인한 급수관의 이탈방지를 위해  $\Phi=80\text{mm}$ 이상의 주철관 변곡 부위에는 콘크리트로 보강한다.
  - ㉤ 급수관의 재질은 시공성, 경제성, 내구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급수관로를 선택한다.
  - ㉥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⑧ 하수도
- ㉠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하수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하되 기존 및 시공 중인 배수 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 방식 및 유량 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의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한다.
  - ㉡ 배수 시설은 해당지역에 특성에 맞추어 계획하되,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 부분은 우수관로가 우수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 경로로 계획하여 간선 배수 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한다.
  - ㉢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 ㉣ 관경 최소치는 우수관  $D=450\text{mm}$ , 오수관  $D=300\text{mm}$  이상으로 한다.
  - ㉤ 두개의 관의 합류하는 경우 중심 교각은  $60^\circ$ 이하로 한다.

- ㉞ 관거 접합의 맨홀에 있어서는 하류 관거를 상류관거보다 2cm 이상 낮게 부설한다.
  - ㉟ 관거내의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구배는 관내 유속을 1.0~1.8m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우수는 0.8m~3.0m/sec, 오수는 0.6~3.0m/sec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㊱ 우수 맨홀 뚜껑은 차도에는 주철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 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우수 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제 뚜껑을 사용한다.
  - ㊲ 우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부에는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인버트(Invert)를 설치한다.
  - ㊳ 우·오수관의 재질은 현장여건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 ⑨ 포장
- ㉠ 도로 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도, 가로 시설물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 ㉡ 부지내 주차시설은 주차방법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적합한 규정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주차장은 평면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횡단구배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도로 및 주차장의 각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 곡선반경 및 차선평을 확인한다.
  - ㉣ 도로 및 광장 포장 두께는 기능에 따라 적정 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른 CBR 시험치에 의거,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 심도를 고려한 최소 두께로 설치한다.
- ⑩ 구조물
- ㉤ 부지 조성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여건,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옹벽 등의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거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를 한다.
  - ㉥ 옹벽은 전도, 활동, 침하, 지반파괴 및 지반지지력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한다.
  - ㉦ 뒷채움 및 지지 지반흙의 내부마찰각은 실제값(사질토)으로 하고 옹벽의 뒷채움이 경사지게 성토 될 경우에는 경사각(1:1.5)과 동일하게 한다.
  - ㉧ 옹벽의 구조세목은 표준시방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옹벽 후면 유출수는 뒷채움내부에 30cm이상의 배수층을 설치하여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저하시키고, 최하단에 버림 콘크리트로 바닥에 불투수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유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한다.
  - ㉨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 ㉩ 옹벽등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하중,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한다.

라) 측량조사

- ①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재 수속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 ④ 계획지역 검토에 필요한 범위까지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측량종류 : 현황측량
  - ㉠ 현황측량의 축척은 1:1,000, 좌표는 평면직각좌표를 사용하고 거리는 평면거리로 한다.

- ㉠ 측정밀도는 도상 0.5 ~ 1.0 cm정도로 측정하여 평판측량의 오차는 도상 0.5mm이내로 한다.
- ㉡ 현황측량도에는 지상시설물(한전 및 통신주, 각종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공작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 ㉢ 현황측량은 지정된 폭원이외에 본 과업수행시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고 현황 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주요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한다.
- ㉣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지적원도 등을 확인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2) 조경 분야

### 가) 일반지침

- ① 최신공법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 ② 주요 자재원을 선정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③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구상 개념도에 의하여 계획하여야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④ 산림치유기능 시설의 도입과 효율적 활용이 되도록 차량동선 및 보행자(치유)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수경.운동.녹지공간을 계획한다.

### 나) 설계 내용

- ① 정지
  - ㉠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 ㉡ 정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 ㉢ 불량식재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 필요한 경우 마운팅 등을 이용한 지형변화를 주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 ② 구조물
  -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를 한다.
- ③ 시설물
  - ㉠ 치유숲 산림치유시설 등은 주변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 ㉣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한다
  - ㉤ 산책로 등의 포장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포장방법 등은 지양하고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 ④ 식재
  - ㉠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의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거리를 확보한다
  - ㉡ 특히 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수종선정과 배식 방법을 강구한다.
  - ㉢ 잔디는 전면 평떼로 식재하되 주변상황 및 여건에 따라 줄떼를 식재한다.
  - ㉣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 ㉑ 수목배식 간격.밀도는 조경설계 표준시방서 및 조경설계기준에 따른다.
- ㉒ 식재지 전역은 적정시간 햇빛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식재 설계에서 제외한다.
- ㉓ 가물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개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 ㉔ 필요시 옥상 및 실내조경을 할 수 있으나 옥상 및 실내에 조성되는 녹지에는 수목 생육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계획을 세워 설계에 반영한다. (구조물의 안전도 검사, 적정 토심, 일조량, 급수, 배수, 방수, 보온, 유지관리 등)
- ㉕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한다.

⑤ 이식

- ㉖ 부지 내 생립 중인 기존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㉗ 나무를 캐기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부를 에워싸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여 뿌리의 분포와 2차근여부 .심근성 .천근성 .조밀도 등을 조사하고 사질토와 역질토등 뿌리 분 형성이 곤란한 수목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㉘ 이식목의 규격은 표준품셈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운반시 뿌리분의 크기는 해당 근원직경의 3~5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배수시설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결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3) 기계(기계소방 포함)설비 부문

가) 난방 설비

- 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 및 입지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난방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② 건물 기능에 따라 구분 ZONE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 냉방을 위한 피트를 설치한다.

나) 급.배수 급탕 위생설비

- ① 상수도 분기예상 지점의 관경 및 수압등을 면밀히 검토후 적절한 급수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 ② 위생의 오수 및 배수배관은 단관식으로 배관토록하고 기존 오수관로에 연결토록하며 통기관을 두어 악취를 제 거토록 하여야 한다.

다) 소화 설비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맞도록 설비하여야하며 특수 소화설비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편익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을 설계에 적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마)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기계.전기)는 동일업체에서 설계하고 해당분야 설계서에 각각 포함한다.

4) 전기(전기소방 포함).통신설비 부문

가) 전기 및 정보통신 설비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표준시방서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내.외선규정정보통신 기술기준에 의거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전기설비의 부하용량은 일반전등, 전열, 동력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 조명의 기준은 각 실별 기능별로 기준 조도이상을 확보하고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효율성 좋은 조명기구를 설계에 반영한다.

① 조명기구는 고조도 반사갓을 채용(효율 90%이상) 한다.

② 형광등용 안정기 및 램프는 한전 고마크 인증제품을 채용하고 안정기는 1등용 전자식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한전 인입지점 및 KT 인입지점을 파악하고 건물내 수전지점을 고려한다.

마) 동력공급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기 간선설비를 정하도록 한다.

바)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유도등, 화재감지기등은 관련법규에 맞춰 계획하고, 장애인 편익시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사) 각종 자재는 국산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 유지관리상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수입자재 (특수자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를 사용하여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아) 피뢰설비는 관계법규에 따른다.

자) 동력공급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기 간선설비를 정하도록 하고 향후 전기설비의 증설 등에 대하여 여유 있는 계획을 한다.

차) 간선 계획시 EPS실을 확보하고 케이블은 난연케이블을 사용하며 사용전선은 HIV를 기준으로 한다.

카) 유사시에 대비한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비상발전기설치를 고려한다.

타) 통신 인입에 따른 맨홀설치 위치 선정 사전검토

파) 방송설비 설치시 소방 화재탐지설비로부터 비상 방송라인 구성

하) 전화수구 반영

거) 화재신호 수신시 구내방송설비와 상호 연동

바. 설계도서 작성지침

1) 설계도서 작성원칙

가) 작도용 용지

작도용 트레이닝페이퍼는 영구 보관에 지장이 없는 품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과 양식

도면 원고의 크기는 594mm × 841mm로 하고 윤곽선 건명판 등 양식은 별도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한다.

다) 기입치수 및 단위

설계도면에 기입되는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고 치수는 mm로 표시한다.

라) 표기문자

표기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와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은 영문 및 한자로 병행표기하며, 표기숫자는 일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마) 축척

도면의 축척은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가능한 축척을 감독관과 통일시켜야한다.

사)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 기술자의 날인을 필하여야 한다.

- ① 건축도면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철한 건축사
- ② 전기도면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설계업 면허업체 및 소속 설계자
- ③ 통신도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2) 도면작성 일반요령

가) 도면작성시의 일반요령

모든 도면상에는 가능한 한 축부호, 라멘부호 설명을 기입하여 어느 부분인가를 알기 쉽게 한다.

나) 건축도면 작성시의 다음 특기사항 중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한다.

- ① 건축일반 설계도면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도면목차, 외부투시도, 실내마감도, 배치도, 각층평면도, 일반단면도, 입면도, 평면 상세도, 실별면적도, 주단면상세도 (KEY PLAN), 부분상세도, 실내전개도, 창호 일람표, 창호도, 각층별면적도, 흙막이도
- ② 건축구조 도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층구조단면도, 기초보스라브 및 골조 일람표, 각종 스라브배근 상세도 및 전개도, 구조상세도, 라멘도 기타 필요한 도면
- ③ 평면도의 각실의 실명, 실번호, 실면적을 직접 기입한다. (축척 1/30 ~ 1/2000)
- ④ 주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 상세도(축척 1/5 ~ 1/30) 평면 및 전개도, 부분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 ⑤ 구조도의 철근정착 이음등을 정확히 표시하고 라멘이 다를때마다 반드시 라멘 배근도를 작성한다.
- ⑥ 창호기호 표시는 평면도에 표시가 복잡하면 별도 창호평면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창호도는 개소, 크기, 위치, 재질, 부속철물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 ⑦ 천장평면도는 반드시 작성하고 천장부착 전등기구를 전기설계 또는 기타도면과 부합하도록 작성한다.
- ⑧ 설계도서에는 건축법규 및 관계해당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다) 기계도면 작성시의 특기사항

- ① 기계설치 및 설계도서 작성시 건축과 전기설계에 부합되도록 상호 협조하여 작성한다.
- ② 옥내 주배관 종.횡단면을 작도하고 배관의 구배를 표시한다.
- ③ 평면도에서는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취부상세 및 부분별 상세를 반드시 작도한다.
- ④ 축척 1/100의 건축평면도에 설계하여야 하고 반드시 축부호, 라멘부호를 기입하여 어느 부분인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⑤ 옥내 피트 난방 배관의 구배는 순구배로 하여야 하고 건축구조상 보(Beam)를 통한 경우에는 복관통 스라브 도면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주요 부분이 1/100도면으로 해독하기 어려운 곳은 반드시 확대 평면상세도(1/50 또는 1/300), 단면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⑦ 각종 배관의 구배는 관계규정에 충분하도록 건축등에 반영하여 기능을 발휘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⑧ 화장실 배기는 동별 기능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설계토록 한다.

⑨ 기타 설비관련 부대시설에 대한 도면이 작성되어야 한다.

라) 각종표시

① 마감재료의 표시

마감재료는 해당 자료를 “--”표로 인출하여 부재명, 재료명, 규격, 마무리, 색처리순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 규격의 크기는 길이 X, 폭Y, 두께 Z순으로 한다.

② 재료 안면표기

재료 안면표기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재료등 규정에 준하되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③ 단면위치 표시는 다음 보기의 요령을 작도한다.

○ 단면을 표시하는 경우

$\frac{B}{A - 21}$  ----- 도면 단면표시

○ 입면 또는 전개도를 표시한다

$\frac{C}{A - 21}$  ----- 도면 단면표시

○ 부분 상세기호

$\frac{B}{A - 21}$             일련번호

④ 단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명을 기입한다.

마) 상세통일

본 공사의 설계는 주위 환경에 부합되도록 통일성 있게 처리하여야 하며, 각종 상세부분의 표준안을 사전에 협의한 후 본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3) 설계 유의사항

가) 각 설계도서는 더 이상의 세부 설계가 없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하도록 분야별로 구분 작성한다.

나) 각 설계도서는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다)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조명, 음향 등 각 분야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한다.

라) 용역자는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설계용역에 필요한 문이나 건의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발주청”에서 임명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해당 관청에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해당법규나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축협의 및 준공후 건축물 관리대장 종료후까지 완료해야한다.

사) 기타 과업지침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감독관 및 검수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아)“발주청”이 공사를 당해연도에 미추진 또는 시공계약자 미선정등의 사유로 불가변동으로 인한 내역변경요인이 생길시 용역자는 이에 대한 내역서를 조건 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3.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가.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가) 위    치 : 돌산, 자산공원

나) 면    적 : 445,751m<sup>2</sup>(돌산 212,700, 자산 233,051)

- 2) 내용적 범위
  -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나) 환경성 검토
  - 다) 교통성 검토
  - 라) 경관성 검토

## 나. 과업수행기준

- 1)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계획인 2030여수도시기본계획, 2025여수도시관리계획(재정비), 여수시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2)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반규정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시설물의 입지를 계획할 때에는 주변의 여건과 시설수요의 변화와 관리방식 및 운영방법,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설정 하여야 한다.

## 다. 계획검토

-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결정에 필요한 국토계획법 및 관계법 검토
  - 나)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결정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검토
-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가)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과의 관련사항 검토
- 3)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
  - 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4) 관련 기초조사서
  - 가) 계획설명서,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등 작성
- 5)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
  - 나)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 6)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작성
  - 가) 계획 공람공고 때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7)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가) 위치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 8)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도
  - 가)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 작성
- 9)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가)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하여 작성
  - 나)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라. 지형도면고시

## 1) 과업수행 일반원칙

- 가)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같은 날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의 작성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 나)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 다) 지형도면고시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라) 지형도면고시 도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마) 도서의 작성은 관련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 바) 각 도면은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확인공무원 및 용역 회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사)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아) 축적,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자) 향후 전산으로 관리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및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시스템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사항을 탑재하여 민원 행정에 원활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산파일(도형, 속성자료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검토사항

### 가)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현황 검토

- 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을 검토 및 분석한다.
- ② 공원계획,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시설 내용을 검토한다.
- ③ 기존 지형도면고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검토한다.
- ④ 기존도로 및 주요 시설물의 이용 상황을 검토한다.
- ⑤ 상수도 시설 등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을 검토한다.

### 나) 위치, 면적, 선형 확정 도시

- ① 결정내용은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지형·지형도에 확정(고시)한다.
- ② 지형도면고시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존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내용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선 확정도시
- ④ 면적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면적확인 및 경계선 확정도시
- ⑤ 선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선형 확정도시

### 다) 도면규격 및 도식기호

- ① 지형도면 등 작성 및 출력시 사용하는 용지의 크기는 A0(841mm×1189mm)를 표준으로 하되 구역 범위를 고려하여 여수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지역·지구 등의 표시기준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도식규정을 따른다.
- ③ 모든 지역·지구 선은 수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칼로 긁거나 채색 등으로 은폐하는 것을 금합니다.

## 4. 공원조성계획(변경) 수립

### 가. 과업의 내용

- 1) 내 용 :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 나. 일반지침

- 1) 본 과업은 돌산, 자산공원의 세부 실시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 인허가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세부 실시계획 등을 도출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도출한다.
- 3) 각종 조사, 인허가, 영향검토 등의 관련계획 및 발주처와의 협의결과에 의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적의 대안을 선정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규정, 규칙, 조례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다. 세부지침

##### 1) 개발여건분석

가) 현황조사 및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 대상지 일원은 물론 주변 영향권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여건을 검토·분석한다.

- ① 입지환경 : 위치, 접근성, 진입체계, 연계성 등
- ② 자연환경 : 지형 및 지세, 기후, 수문, 생태계, 경관 등
- ③ 인문환경 : 토지이용, 기반시설, 지장물, 문화재 등
- ④ 기 타 : 관련개발계획 수립여부, 관련법규상의 규제 등

##### 2) 기본구상

가) 계획Concept

- ① 여수시의 도시특성 및 발전방향,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 주변 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돌산, 자산공원에 대한 종합적·장기적인 계획주제와 미래상을 구현한다.
- ② 계획주제와 부합된 공원의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형태, 구조 등 전략적 이미지 요소의 구체화 및 디자인을 시행한다.

나) 이용 Program 계획

- ① 공원녹지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용시설, 보전시설, 각종 체험시설 등 다양한 도입활동과 시설프로그램을 개발해 테마와 미래상을 실현한다.

다) 이용수요/규모 산정

- ① 이용수요를 검토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장래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여 적정규모의 개발을 유도한다.
- ② 이용객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입시설을 선정하며, 소요부지의 규모산정, 조성대안의 작성 및 비교 검토 등의 제반 계획과정을 시행한다.

##### 3) 계획(부문별)

가) 조성계획

- ① 자연의 다양한 요소인 향기, 경관 등을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

시키는 산림치유기능 도입을 전제로 함에 따라 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맞게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② 환경성 질환과 생활습관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수단으로 산림을 활용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 및 심신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적 연계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며 지나친 인공화가 되지 않도록 생태적 이용특성에 따라 구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향기·경관·빛·바람·소리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오감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동시설은 접근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④ 건축물·시설물 등은 흙·나무 등 신재생에너지(목재펠릿, 태양광 등)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및 중수도시스템 도입 등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한다.
- ⑤ 공원 조성은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토지형질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나) 토지이용/시설배치계획

- ①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용객과 이용시설의 결합관계, 생태적인 밀도, 시각적인 관점,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계획안을 작성한다.
- ②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공원에 대한 입지선정계획 및 진입도로, 주변 공원화계획 등을 검토 반영한다.
- ③ 공원의 규모, 도입시설 등에 대해서는 각종 보고회를 통해 계획안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 다) 교통동선계획

- ①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계획하되, 가능한 한 자연친화적이고, 기능적인 동선연계계획을 수립한다.
- ② 이용객의 다양한 체험욕구를 충족시키고 불거리를 연출할 수 있도록 가로변 이용시스템과 도로, 주차장, 보행로 등의 교통체계 및 교통수단을 정립한다.

#### 라) 건축계획 및 건축물 배치계획

- ① 건축물의 규모, 외관, 기본구조 등을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 건축물과 연계된 공원기능 및 시설 보완대책을 수립한다.

#### 마) 기반시설계획

- ① 본 사업과 관련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 및 통신,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부문별로 소요용량을 산출하고, 공급 및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바) 경관조성계획

- ① 수목의 생태, 기능, 미 등을 고려하여 주변 자연경관 및 단지분위기와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파고라, 벤치 등 조경시설물은 특색있게 계획한다.

- ② 대상지내에 도입되어야 할 볼거리 연출을 위해 색채, 조명, 환경장식, 수경요소(waterscape) 등의 각종 옥외경관요소를 도입하며, 이들 요소가 자연환경과 어울리도록 배치한다.

사) 환경보전계획

- ① 공원 조성 및 시설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배치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한다.

아) 사업투자계획

- ①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 ② 단계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되 실현성을 전제로 하며,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비를 제시한다.

자) 관리운영계획

- ① 조성후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기구, 관리요원, 시설물 유지관리대책, 안전관리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제시한다.

차) 조경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

-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각종 공원시설을 및 녹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여수지역에 적합한 수종과 병해충에 강하고, 공해에 강한 수종 등 선정하여 특색있게 배식한다.
- ③ 조경시설물은 품질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강한 제품 등을 선정하여 조화롭게 설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④ 수종의 규격 및 수량은 시장의 수요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수종의 확보가 가능한 수종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조경식재지의 토양은 배수와 통기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기준으로 수목식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⑥ 시설물 배치 등으로 지장목이 발생할 시에는 수형과 생육이 양호한 수목은 이식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06)」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2. 공원조성계획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관련도면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 납품한다. 전산자료는 따로

이동식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 3. 실시절계

#### 가. 보고서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시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도록 한다.

- 1) 과업의 목적,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 2) 사전조사 사항
- 3) 설계기준
- 4) 세부시공계획  
가) 공종별 비교 검토 내역    나) 구조물 및 수리계획    다) 기타 계획
- 5) 세부공사비 산정
- 6)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7) 참여 기술자의 명단
- 8)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 및 참고사항

#### 나. 수리 및 용량 계산서

- 1) 수리 및 용량계산서는 별권으로 제출한다.
- 2) 수리 및 용량계산서는 전산 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입력 자료 및 출력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 3) 수리 및 용량계산서 계산은 과거 호우시 홍수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히 작성한다.
- 4) 수리 및 용량계산서 계산시 확률강우량의 적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강우량과 공식을 발췌하여 사용한다.
- 5) 입력 DATA는 근거를 제시한 후 사용한다.
- 6)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 다. 구조계산서

-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를 기재한다.
-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 (SAP90, GT-STRUDL, NASTRAN, STAADIII, ADINA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4)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 5)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항목에 바로 수록한다.

- 6) 구조계산서 각 계산단면(TYPE별)마다 표지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 7) 구조계산서 주요설계 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면

- 1) 설계 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4) 설계도면에는 주석 (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들을 수록한다.
- 5)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 6) 설계도면은 KS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 7)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8)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도면 주석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마. 공사시방서

-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시방서」를 활용하여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마)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 바)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자) 주요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 차)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카) 기타 주요공사 사항

바.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

이 없도록 한다.

-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5)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6)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7)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순서대로 작성한다.
- 8)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시공사), 감리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키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10)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특별시방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 11) 관련시방 또는 지침에 규정된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공차의 변경이 필요할 시 이를 기재한다.

#### 사. 설계예산서

-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제경비 산출근거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 3) 노임기준은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 한다.
- 4)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4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 5)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설비공사품셈」 「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준한다.
- 6)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4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 7)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 한다.
- 8) 설계예산서는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2007), 건설공사 실적공사비(건교부 2008.2)를 참고하여 품목이 있는 경우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한다.

### 3-1. 실시설계 납품

#### 가. 성과품 납품시기

- 1) 성과품의 납품은 최종성과품 납품, 공사발주시로 구분한다.
- 2) 최종 성과품 납품
  -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 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고
		책자 및 도면	CD-ROM	
·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각10부	5부	
· 구조계산서		각5부	각3부	필요시
· 시방서 (조경, 전기)		각5부	각3부	
· 설계예산서 (조경, 전기)		각5부		
· 수량산출서 (조경, 전기)		각5부		
· 단가산출서 (조경, 전기)		각5부		
· 설계도면 (조경, 전기)	축소도면	각5부		
· 측량원도 및 야장		각1식		필요시
· 지반조사자료		각1식		필요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각1식		

※ 발주처의 분리발주 필요시 성과품내용은 조정할 수 있음

### 3-2. 도시관리계획 납품

#### 가. 도시관리계획

- 1) 성과품의 납품은 최종성과품 납품시 한다.
- 2) 최종 성과품 납품
  -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 부수

성과구분	성과도서			비고
	구분	규 격	제출부수	
계획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1/5,000 1/25,000	2부 5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입안기초조사 관련 서류 ○ 관계부서 협의 서류 및 도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서류		5부 1부 각2부 필요부수	
보고서	○ 도시관리계획 계획서 ○ 환경성검토보고서 ○ 교통성 검토보고서 ○ 경관성 검토보고서		10부	
기타자료	○ 성과품 결과 CD 제출		1식	

#### 가. 지형도면고시계획

- 1) 성과품의 납품은 최종성과품 납품시 한다.
- 2) 최종 성과품 납품

•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 부수

성과구분	성과도서			비고
	구분	규격	제출부수	
계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도면고지도</li> <li>○ 지형도면고시조서</li> </ul>	1/1,200 A4	2부 2부	
기타자료	○ 성과품 결과 CD 제출		1식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자료	—	1식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재자료	—	1식	

4. 예정공정표

구분	과업기간 (10개월)					비고
	2	4	6	8	10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공원조성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작성 안내서

---

2019. 5.

 **여수시**

# 목 록

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참고서식 > 1
II.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참고서식 >	
가. 표 지 (양식 1)	4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여확약서 (양식 2)	5
다. 과업 참여기술자 조직 (양식 3)	6
라.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양식 4)	7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5)	10
바. 신용도 (양식 6)	11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7)	13
아. 업무중복도 (양식 8)	15
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양식 9)	16
차.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양식 10)	17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양식 11)	20

# 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 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적격 용역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 나. 과업 개요

- 용역명 :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 위치 : 여수시 돌산읍 산369외(돌산, 자산공원)
- 용역량 : A=445,751m<sup>2</sup>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 용역비 : 362,168,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다. 평가서 작성

#### 1) 규격 및 제본

- 규격 : A4(10절)
- 지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흑백)
- 제본 : 양면 좌철

#### 2) 제출부수

- 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7부  
(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5부는 별권으로 작성)

#### 3) 제출장소 : 여수시 공원과(여천체육공원길 49 망마경기장 1층)

## 라.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 마. 참여 및 평가인원

### 1)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조경)

. 분야별 기술인 : 총 35인

- 분야별 인원 : 5개 분야

- 해당 분야 : 조경, 토목구조, 도시계획, 토질·지질, 환경

### 2) 평가대상 기술인 : 36인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5인

. 분야별참여기술인 : 5인

. 실무기술인 : 25인('업무중복도'항목에 한하여 평가)

##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개별통보 한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I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 참고서식 >

양식 1

### 가. 표 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변경및실시설계용역 (돌산자산)공원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 설계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 .
(주) (주) ○ ○ ○ ○ ○ ○ ○ ○ ○ ○	(주) ○ ○ ○ ○ (주) ○ ○ ○ ○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협약서

본인은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하고자 별첨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 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첨 부 :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사용인감계 1부.  
 4. 공동수급협정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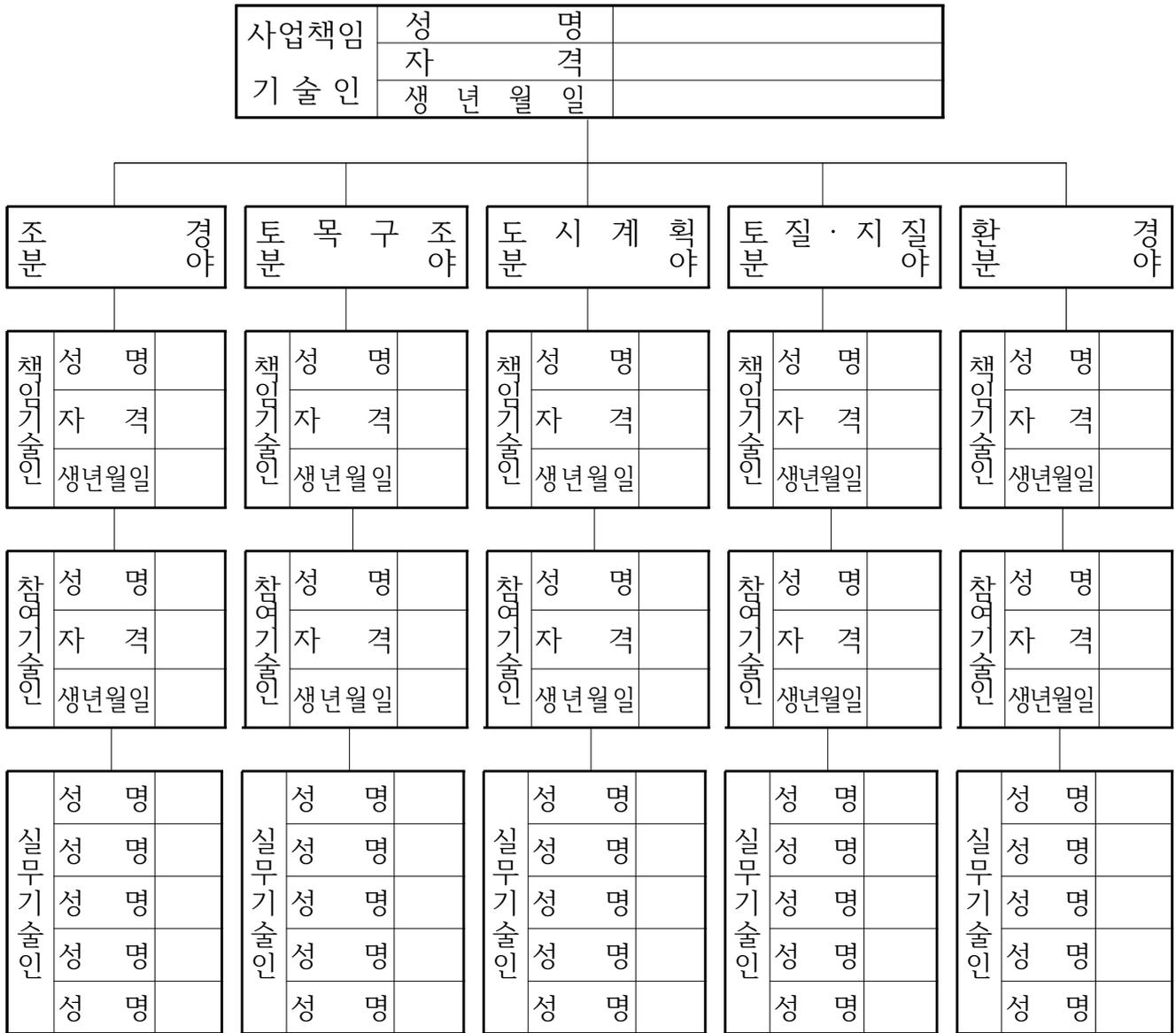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여수시장 귀하

다. 과업 참여기술인 조직



o 참여기술인의 범위 및 자격

-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 조경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5인 ) : 조경, 토목구조, 도시계획, 토질·지질, 환경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5인 ) : 조경, 토목구조, 도시계획, 토질·지질, 환경
- . 실무기술인 (25인) : 조경, 토목구조, 도시계획, 토질·지질, 환경

**양식 4**

**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 평가대상 기술인 개인별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 급	최종학력 (학위)	자 격 증			경 력 (년수)	실 적 (건수)
					자격증	등록번호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조 경								
	토 목 구 조								
	도 시 계 획								
	토 지 질 질								
	환 경								
분야별 참여 기술인	조 경								
	토 목 구 조								
	도 시 계 획								
	토 지 질 질								
	환 경								

(주)

-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 사본을 첨부
- .경력란에는 참여기술인별로 양식 4-3-①항의 해당분야 경력기간 기재
- .실적란에는 참여기술인별로 양식 4-3-②항의 최근 10년간 수행한 해당용역의 건수를 기재
- .상기 란에 기재된 평가대상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사직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본 평가서 내용대로 불이행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실무기술인별 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비 고	
실무기술인	조 경					
	토 구 목 조					
	도 계 시 획					
	토 지 질 질					
	환 경					

(주)

-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 . 각 해당분야별 실무기술인은 5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낙찰업체의 경우 실제 착수계 제출시에도 동일한 인원으로만 구성하여 적용

□ 평가대상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 ○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졸 업 년 월 일		기술인 등 급			
	자격증(분야 및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① 해당 분야 경력		일 (년 월)	② 해당용역 실적건수		건		
실 적 사 항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계약기간 년월 ~ 년월 (일)	참여기간 년월 ~ 년월 (일)	비 율 (참여기간/ 계약기간)	발주청	적용 건수
해당 분야								
유사 분야								

(주)

- . 개인별로 작성, 연차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 평가대상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사항은 평가기준에 의거 해당 전문분야의 총경력 ①을 명기하되, 연월일을 중복 기재하지 말 것
- . 해당용역 참여건수②는 평가기준에 의거 단일 용역사업 중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용역 등 종류별로 명기
- .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및 유사분야를 분류하여 작성할 것
- . 기술인 자격취득 증빙서류 첨부
- . 참여기간은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을 명기
- . 참여기술인은 용역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
- . 해당용역 참여건수에 대한 용역실적증명서 첨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주)	교육훈련기관	업 체 명

(주)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수행실적

분 야	성 명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단위:월)	전차용역 참여형태	비고

(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된 실적으로 해당 발  
주청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인명단 원본 첨부

양식 5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지분금액)	발 주 청	지 건	분 수
계	건						

(주)

- . 평가기준에 의거 준공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 기관, 전문기관 발행 준공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실적증명서 첨부
- . 공동도급인 경우는 준공금액란에 총 금액( )과 해당회사 지분율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해당회사의 금액을 합산 집계
  -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 하도급 : 발주처,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처 승인서 사본 첨부
- . 턴키, 대안입찰, 민간투자사업의 설계용역 수행실적 인정
  - 「낙찰금액×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효율」범위내
  - 단, 해당용역업체의 참여지분율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낙찰금액, 참여지분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전차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 주 청	비 고

(주)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

□ 용역수행성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발 주 청	용 역 명	용역공종	용역기간	용역금액	평 가 수	비고

(주) 용역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청 공문 등 첨부

양식 6

바. 신 용 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벌점

○ 용역업자

회 사 명	제재기관	제재사유	용 역 명	입찰참가 제한기간 (개월)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비 고
계						

○ 참여기술인

참 여 기 술 인			용 역 명	제재기관	제재사유	기술자격 정지기간 (개월)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분야	성 명	참여기간					
계							

○ 벌점

구 분	회 사 명 (기술인명)	누계평균 벌점	비고

(주)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 업체별로 별도 작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확인 필요

● 과징금이 있을 경우 별도 표시

## 2)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1. 회 사 명		
2. 설 립 년 도		
3. 자 본 금		
4. 신용평가기관		
구 분	평 가 등 급	비 고

(주)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  
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 개발실적

구 분	건 명	기술종류	내 용	유효기간 (경과기간)	등록권자	참여 지분율	점수
신 기 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주)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만 인정(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참여 지분율 기재
-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2) 투자실적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① 20	② 20	③ 20	평 균 ①+②+③/3
건설기술개발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비율				

- (주).최근 3년간 건설부분의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에 한하여 인정) 비율
- 회사설립 년수가 3년미만인 경우 제출된 자료의 년수로 평균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
  - 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참여 지분율 기재

### 3) 활용실적

구 분	활 용 실 적 명 칭 (번 호)	활용건수 (단위 : 건)	활용금액 (단위 : 백만원)	점수
신 기 술				
특 허				
실용신안				

(주)

.지정된 기관의 건설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신기술 : 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
- 특허 및 실용신안 :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기관

양식 8

아. 업무중복도

구	분	성명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중복기간 (개월)	발주처	사업참여기간	
									참여분야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조경									
	토구목조									
	도계시획									
	토지질척									
	환경									
분야별참여기술인	조경									
	토구목조									
	도계시획									
	토지질척									
	환경									
실무기술인	조경									
	토구목조									
	도계시획									
	토지질척									
	환경									

(주)

- . 본 과업의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 기재
-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대상용역 전체 기재
- . 계약서, 착수(착공)계 등 확인 가능 서류 제출(단, 실무기술인 제외)
- . 중복도를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실수 또는 고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 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신규 고용인원(명)	직전년도 평균 고용인원(명)	신규 고용율(%)	참여지분율 (%)	비 고

(주)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자료 필요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frac{\text{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text{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차.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장기미집행(돌산, 자산)공원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 설계용역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

(주) ○○○○○○○○○  
○○○○○○○○○ (주)

# 1. 기술능력

##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 업 명	수행기간	시행처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 2) 사업명 :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2. 업무관리능력**

###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 수행 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카.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내용	점수	비고
<b>합 계</b>		<b>100</b>			
가.참여기술인		<b>50.0</b>			
	사업책임기술인	15.0			
	등급실적	3.0			
	경력실적	4.0			
	실적	8.0			
	분야별책임기술인	19.0			
	등급실적	4.0			
	경력실적	7.0			
	실적	8.0			
	분야별참여기술인	14.0			
	등급실적	4.0			
경력실적	5.0				
실적	5.0				
교육훈련,전차용역	2.0				
교육훈련	1.0				
전차용역	1.0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b>15.0</b>			
	건수	7.0			
	금액	7.0			
	전차용역	1.0			
다.신 용 도		<b>10.0</b>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벌점 재정상태 건설도	7.0			
		3.0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15.0</b>			
	개발실적	2.0			
	투자실적	10.0			
	활용실적	3.0			
마.업무중복도		<b>10.0</b>			
	사업책임기술인	3.0			
	분야별책임기술인	4.0			
	분야별참여기술인	2.0			
	실무기술인	1.0			
바.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필요시 세부평가서 첨부

## 임도 관리원 모집 공고

관내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임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기 위한 임도 관리원을 모집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3.

###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2019년 임도 관리원 모집
2. 선발인원 : 1명
3. 인 부 임 : 66,800원
4. 근무기간 : 2019. 5. ~ 12. (예산범위내)
5.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고 산림 지리를 잘 알고 있으며,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6. 임 무
  - 가. 임도 및 방화선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나. 우기 등 기후여건에 맞춰 임도 및 방화선 집중 점검 및 순찰
  - 다. 임도변 풀베기 작업 지도 감독
  - 라. 임도 시설물(볼라드 등) 관리
  - 마. 임도관리대장 및 자료(데이터) 관리
7. 접수기간 : 2019년 5월 13일 ~ 2019년 5월 17일
8. 선발자 확정 발표 : 2019년 5월 17일(개별통지)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고령자,장기실업자,여성가장,결혼이주자 등) 가산점 부여
9. 구비서류 : 신청서(산림과 구비), 건강검진서, 주민등록등본, 관련자격증사본 등
10. 서류접수처 : 산림과(산림보호팀)

※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과  
산림보호팀(☎061-659-46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 월 13 일

여 수 시 장 김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402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여수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의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서로 화합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 등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인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인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인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

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

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으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1일에 사용한 육아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한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각 재직기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각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해당 재직기간 내에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⑦ 시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⑧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의무에 따라 입영(「병역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및 퇴소 당일 각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때에는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1.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이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제18조제6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사용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한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잔여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 사

용횡수를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제3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li> <li>○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li> <li>○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li> <li>○ 문의를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li> <li>○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li> <li>○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li> <li>○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li> <li>○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li> <li>○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li> <li>○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을 엄수한다.</li> <li>○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li> <li>○ 근검절약한다.</li> <li>○ 남에게 겸손한다.</li> <li>○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li> <li>○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li> <li>○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li> <li>○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li> <li>○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li> <li>○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li> </ul>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 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9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 월 13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403호

붙임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조례 제1403호

###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기관·단체 등을 포함한다)와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시정시책·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 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실시부서”란 채택한 제안의 내용을 검토·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1. 시민제안 : 시민이 시책 또는 행정전반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제안
2. 아이디어제안 : 공무원이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하거나 기존 업무를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안
3. 실시제안 :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4. 공모제안 :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7.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6조(제안의 제출) ① 누구나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

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는 제안서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전자우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제3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심사실무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채택여부
2. 실시부서 및 제1호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제18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5. 제19조에 따른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6.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8.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는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자와 관련이 없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과 제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 심의·채택 및 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청구의 채택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불채택된 제안 중 실시부서에 추진을 권고하는 제안의 추천 및 선정
6. 기타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제13조(전문위원) ① 시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서면 또는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5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경제성
7. 노력도

② 제1항제6호의 경제성을 판단할 때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채택된 제안이 실시부서에서 신속히 시행되도록 예산 등을 우선지원 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

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8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자체 우수제안의 추천)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된 제안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20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으로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제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1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인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제22조(부상금 지급)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2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상여금 지급) ① 시장은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시세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를 준용한다.

제25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등)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 또는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 또는 부상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6조(그 밖의 보상)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제안 중에서 제안등급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무위원회의 추천으로 추진을 권고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기념품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27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를 따른다.

####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8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존 조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 및 제14조에 따라 채택이 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21조 관련)

구 분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가점	비 고
업무 관련 창안 채택	금 상	특별승급 1호봉	0.5 이내	
	은 상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0.3 이내	
	동 상		0.1 이내	

비고 : ① 특별승급에 해당할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특급승급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② 공동제안의 경우 2명까지 가점을 부여하되 부제안자 1명은 주제안자의 1/2 인정(당해직급 수상에 한함)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22조 관련)

시 상 등 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 급 기 준
금 상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95점 이상
은 상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90점 이상
동 상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85점 이상
장 려 상	2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75점 이상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5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9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 월 13 일

여 수 시 장

권영봉



여수시 조례 제1404호

붙임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404호

##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개정 건의”를 “제·개정”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 관련 처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령의 적용 등에 있어서 세무부서와 의견이 상이한 경우

제12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납세자권리현장 준수) 세무공무원등은 법 제76조에 따라 제정·고시된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처리업무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2.(생략)</p> <p>3. 납세자권리현장의 <u>개정 건의</u> 및 준수여부 심사</p> <p>제12조(처리원칙 및 방법) ① ~ ③ (생략)</p> <p>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p> <p>1. 지방세 관련 처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p> <p>2. 법령의 적용 등에 있어서 세무부서와 의견이 상이한 경우</p> <p>3. (생략)</p> <p>제26조(납세자권리현장)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고시해야 한다.</p> <p>② 세무공무원등은 납세자의 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p>	<p>제6조(처리업무 등) ① ----- -----.</p> <p>1. ~ 2.(현행과 같음)</p> <p>3. 납세자권리현장의 <u>제·개정</u> 및 준수여부 심사</p> <p>제12조(처리원칙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1. 지방세 관련 처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령의 적용 등에 있어서 세무부서와 의견이 상이한 경우</p> <p>&lt;삭 제&gt;</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26조(납세자권리현장 준수) 세무공무원등은 법 제76조에 따라 제정·고시된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p> <p>&lt;삭 제&gt;</p>

제19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 월 13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405호

붙임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갱신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쌍봉시장의 갱신허가를 받고, 이 조례 시행 전 그 갱신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최초 사용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하고, 그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2개월 후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구 분	명 칭	주 소
상설시장	봉산시장	여수시 봉산 1로 12(봉산동)
	쌍봉시장	여수시 학동 2길 7(학동)
	<u>삭제</u>	<u>삭제</u>
	덕양시장	여수시 소라면 하세동길 10

[별표 2]

시장 사용료(제6조 관련)

1. 상설시장의 사용료

구분	대상	분류	기준	재산가액 적용기준	사 용 료					
					현행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상설 시장	점포	토지	년/ ㎡당	개별 공시지가	1,000분의 25	1,000분의 30	1,000분의 35	1,000분의 40	1,000분의 45	1,000분의 50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	"	"	"	"
	장옥	토지	"	개별 공시지가	"	"	"	"	"	"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	"	"	"	"
	노점	토지	"	개별 공시지가	1,000분의 25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시장별 등급표는 규칙으로 정하며 1등급은 30%를 가산, 3등급은 30%를 감액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다. 점포 2층의 경우 해당 층 전체면적의 50%이상을 사용할 경우 25%를 감액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라.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임시시장의 사용료

구 분	대 상	분 류	기 준	사 용 료
임시시장	장옥 또는 임시판매시설	임시시설	일 / 3.3㎡	330원
	노 점	토지	"	120원

가. 상기 사용료는 3.3㎡를 기준으로 하며, 3.3㎡ 미만은 3.3㎡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예 : 3㎡는 3.3㎡를, 4㎡는 6.6㎡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허가) ①~③ (생략)</p> <p>④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u>3년</u>으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사용(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⑤ <u>제4항의 갱신허가 신청은 1회로 한정하며 갱신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u></p>	<p>제5조(사용허가)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u>5년</u>-----</p> <p>-----</p> <p>-----</p> <p>-----</p> <p>-----</p> <p>-----</p> <p>⑤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 횟수는 <u>1회로 한정하며 갱신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한다.</u></p>

제19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 월 13 일

여 수 시 장 권 2 봉 인



여수시 조례 제1406호

붙임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5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제12조의2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00미터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의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 제목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을“(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제24조제3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철구조물제작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과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위락시설 (다만, 지하층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24조제3호사목(중전의 다목)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주유소”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다만, 교정시설은 교도소, 소년원 및 그 밖의 범의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25조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그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를 “경우와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12m)”를 각각 “(12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관지구 안에서”를 “경관지구(제2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제외한다.)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에 한한다)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으며,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부에 설치할 수 없다.

⑥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에 한한다) 안에서는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후퇴부분에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블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2. 시장이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③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별표 18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가목의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같은 호 나목

의 교육원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 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경우 및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신 설>	제10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5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 (3)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 ----- ----- -----.
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1.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	나. ----- ----- 것. 다만, 300미터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의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3(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예외 등)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태양광 발전시설은 실제 거주자의 전체 동의를 받아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생 략)	제23조(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생산관리 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2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경관지구별로 규정한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가지경관지구	3. -----
<신 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철구조물제작소
<신 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과 격리병원
<신 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 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위락시설(다만, 지하층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나. (생 략)	마.·바. (현행 가목 및 나목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	사. ----- -----주유소-----



<p>&lt;신 설&gt;</p>	<p>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으며,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부에 설치할 수 없다.</p>
<p>&lt;신 설&gt;</p>	<p>⑥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안에서는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후퇴부분에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이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li> <li>2. 시장이 보행자의 편의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li> </ol>
<p>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략)</p>	<p>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p>	<p>②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p>
<p>③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p>	<p>③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p>
<p>④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영 제85조제</p>	<p>&lt;삭 제&gt;</p>

<p>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p>	
<p>⑤ ~ ⑨ (생략)</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p>제5장 도시계획위원회</p>	<p>제5장 도시계획위원회 등</p>
<p>&lt;신설&gt;</p>	<p>제44조의2(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p>
<p>[별표 1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p>	<p>[별표 1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가목의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같은 호 나목의 교육원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들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